#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40

발의연월일: 2021. 2. 2.

발 의 자:김승수·이종배·서범수

유경준 • 윤재옥 • 이종성

홍석준 · 김희국 · 이명수

김예지 · 김용판 · 강대식

최형두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와 국민들의 콘텐츠 수요 가 급증하고 있는바, 국가와 지자체는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 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특히 지자체의 경우 각 지역특색에 맞는 콘텐츠산업을 적극 개발·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법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추진 상황에 비해 법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문화분권을 확보하고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2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lt;신설&gt;</u>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명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당
	<u>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u> <u>여야 한다.</u>